



보도 자료

담당부서 :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 사진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진있음 <input type="checkbox"/> 쪽수 : 9쪽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02-2133-7370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02-2133-7386
	담 당 자	최지은	02-2133-7393

서울시, '서울형 긴급복지' 확대로 약자와의 동행 적극 나선다

- 실직, 질병, 폐업 등 생계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에 대한 일시적·신속한 지원 목적
- 12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4억 900만 원 이하 가구 생계지원 확대
- 복지수급이력 없는 주민, 최초 1회 생계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극대화

2022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주요사례

일용직 근로를 하며 생활하던 최모씨(50대 남성, 금천구) 코로나19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득활동이 중단되었다. 또한 '21.10월 낙상사고로 건강이 악화되어 근로활동을 할 수 없었고 월세가 6개월 이상 체납되어 강제퇴거 위기에 처하였다. 이에 서울형 긴급 복지 주거지원으로 '22.3월 ~ 7월 기간 동안 5개월치 월세(100만 원)를 지원하였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생계·의료·주거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22.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는 실직, 질병, 휴·폐업, 사고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주민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에 총 129억 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 '서울형 긴급복지'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

- 시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지원기준을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달 12일부터 평시 지원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은 ①중위소득 100%이하까지 소득기준 완화 ②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추가 적용 ③생계지원 단가 인상 등이다.

< ①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소득기준 완화 >

- 기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로 기준을 완화하였다.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 4인 가구 기준, 기존에는 소득이 4,590,819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5,400,964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3.1.12.부터 적용, 단위 : 원)

구 분(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85%	1,766,208	2,937,732	3,769,594	4,590,819	5,381,085	6,143,784	6,891,388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②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적용 >

- 한시적 기준 완화가 종료되면 재산기준이 3억 1,000만 원으로 돌아가야 하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3년 기준,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을 적용하여 재산이 4억 9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3.1.12.부터 적용, 단위 : 원)

계 (A=B+C)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제7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대도시) : B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보건복지부고시): C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기본재산액(서울)
409,000,000	241,000,000	69,000,000	99,000,000

※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기준 산출(A) : 보건복지부고시(B+C) 금액 합산

< ③ 생계지원 단가 인상 >

-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생계지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인 가구 3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국가형 긴급복지’를 보완하는 수준이었다. 올해부터는 국가형 긴급복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액을 인상해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2023.1.12.부터 적용, 단위 : 원)

생계지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비고
2022년	300,000	500,000	7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인가구 이상 100만원
2023년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 단가 적용
증가율	108% ↑	107% ↑	90% ↑	62% ↑	90% ↑	117% ↑	

- 이러한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지원 확대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를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될 경우 4인가구 기준, 최대 362만 원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도 지원한다.

- 또한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수급이력이 없는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해 생계지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 최초 1회 지원은 지원기준 초과자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인 ‘동·구 사례회의’(공무원 3인 이상)를 통해 위기상황 등을 검토하고 결정하게 된다.
-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다.
 - 도움이 필요한 본인이나 위기 이웃을 발견했을 때 120다산콜센터(☎ 02-120)로 전화한 후 안내에 따라 3번(긴급복지, 코로나 및 행정일반)을 누르면 해당 자치구 「복지상담센터」로 연결되어 복지상담을 할 수 있으며, 직접 자치구 「복지상담센터」(붙임4 참조)에 전화하여 상담 받을 수도 있다.
 -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야간이나 공휴일의 경우 120다산콜센터(24시간 운영)를 통해 상담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날(공휴일 제외)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접수 후 동주민센터·자치구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세부사항이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 (<http://wis.seoul.go.kr>)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라, 주변 이웃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질까 봐 우려된다”라면서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기준 완화가 종료되더라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평시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을 올리는 등,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기조에 맞춰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업 개요

- 지원근거 :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서울형 긴급복지) 및 시행규칙 제7조
- 지원대상 : 관련법 및 洞·區 사례회의 통해 어려움이 인정된 주민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 질병·부상·방임·학대, 실직, 화재·자연재해, 가정·성 폭력,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지자체가 정한 사유
 - 동주민센터·자치구 사례회의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 결정한 경우
- 지원내용 : 현금 및 현물 지원 [생계·주거·의료·기타(교육지원 등)]
 - 소득·재산 등 기준 충족시 지원 (단, 洞·區 사례회의로 기준 초과자 지원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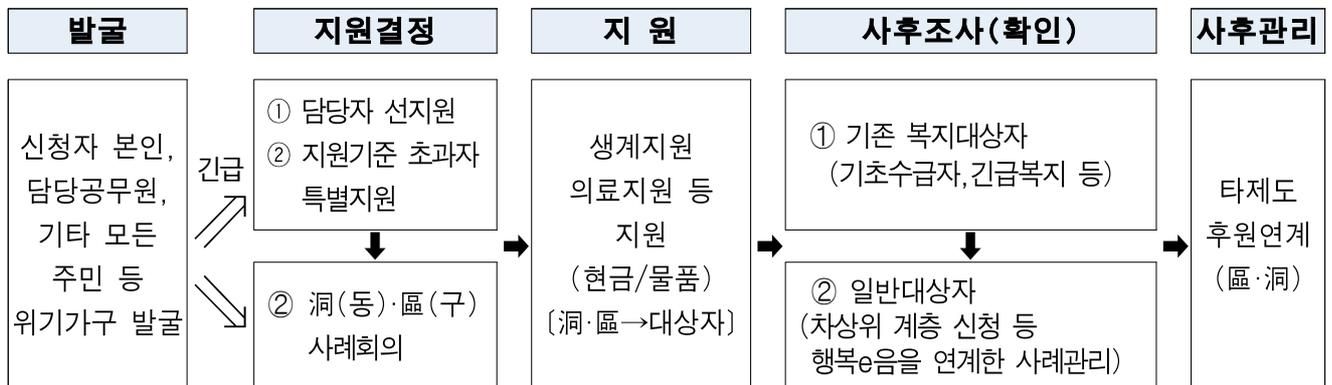
(단위 : 원)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추가 지원	재 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1회	1년 (회계 연도)
의료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회	
주거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없음	
교육지원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없음	
기타지원	연료비 11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 500천원 이내						없음	

- ※ 긴급복지지원법 금액 적용 : 생계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기타지원
- ※ 서울특별시 자체 금액 적용 : 의료지원, 주거지원

□ 지원 절차

○ 위기가구 발굴 → 지원 → 사후조사 → 사후관리



○ 필수이행 : 모든 지원자는 동(洞)·구(區)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연 도	2022년	2023년 (1.12.부터)	
구 분	평시 기준 (미적용)	한시적 기준 완화 ('22.1.1.~'23.1.11.)	'22년 한시적 기준 완화 폐지 ⇒ 평시 기준 적용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small>(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여부, 금융재산은 1천만원 이하로 동일)</small>	310백만원 (미적용)	379백만원 (미적용)	409백만원 <small>(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적용)</small>
생활준비금 * 공제비율 <small>(금융재산에서 차감하는 일상생활 유지 필요금액)</small>	중위소득 65%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00%
지원횟수(재지원 기준)	1년 내 불가(회계연도)	3개월 내 불가(회계연도)	1년 내 불가(회계연도)
생계지원(만원, 가구)	30(1인)~100(4인 이상)	30(1인)~100(4인 이상)	62(1인)~162(4인) ※ 국가형 긴급복지 적용

① 자치구	금천구(최00, 男, 50대)
발굴경위	○ '22.2월 대상자의 지원요청
대상자 실태	○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하며 생활하다 코로나19 이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득활동이 중단됨 ○ '21.10월 낙상사고로 건강이 악화되어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월세 6개월 이상 체납되어 강제퇴거 위기에 처함
조치사항	○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지원으로 '22.3월~7월 기간 동안 5개월치 월세(100만원) 지원
사후관리	○ '22.7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선정 및 내부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 '22.11월 돌봄SOS 식사지원서비스 지원
② 자치구	종로구(오00, 男, 40대)
발굴경위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시원 대상 복지사각지대발굴 캠페인 활동 및 '복지로' 위기가구 신고를 통해 발굴 ○ '22.11월 가정방문하여 복지서비스 상담
대상자 실태	○ 1인가구(비수급자), 고시원 거주 ○ 빛 독촉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말소상태로 지냄
조치사항	○ '22.12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 ○ '22.12월 한파 취약계층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 ○ 주민등록 재등록 후 기초생활수급(생계, 주거급여) 신청 안내 및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안내
사후관리	○ '22.12월 기초생활수급 신청 안내 ○ 일반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속적인 상담 및 모니터링 실시

③ 자치구	노원구(김OO, 男, 40대)
발굴경위	○ 건강보험료 및 관리비 체납으로 '22.5월 동주민센터에서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실태	○ 5인가구(미성년 자녀 3명 양육), 소득 없음 ○ 사업 실패로 일용근로 등을 통해 생활하였지만 코로나19로 급여를 받지 못한 채로 실직함 ○ 신용불량자로 개인회생 중에 있었으나, 실직으로 인해 신용회복 납부금마저 연체되어 개인회생이 중지됨 ○ 실직 및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림
조치사항	○ '22.5월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지원으로 100만원 지원 ○ '22.8월 폭염 취약계층 특별지원으로 냉방용품 지원 ○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22.5.18.) 등 타 복지 제도 연계하여 지원
사후관리	○ '22.10월 다자녀 가정 물품 지원 ○ '22.12월 생필품 지원 ○ 위기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④ 자치구	영등포구(강OO, 女, 50대)
발굴경위	○ '22.11월 대상자의 지원요청
대상자 실태	○ 1인가구(비수급가구), 고시원 거주 ○ '22. 7월 기초생활수급 신청했지만 주택조사 미실시 등으로 탈락하여 '22.11월 재신청함 ○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당장의 생활비가 없고 고시원 월세가 체납되어 생활고에 시달림
조치사항	○ '22.11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30만원), 주거지원(35만원) 지원
사후관리	○ '23.1월 기초생활수급(생계, 주거급여) 선정

붙임4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 현황

연번	자치구명	전화번호	운영시간	비고
1	종로구	02-2148-1121	09:00~18:00	
2	중 구	02-3396-1004	09:00~18:00	
3	용산구	02-2199-7088	09:00~18:00	
4	성동구	02-2286-7942	09:00~18:00	
5	광진구	02-450-1140	09:00~18:00	
6	동대문	02-2127-5001	09:00~18:00	
7	중랑구	02-2094-1615	09:00~18:00	
8	성북구	02-1577-3178	09:00~18:00	
9	강북구	02-901-7300	09:00~18:00	
10	도봉구	02-2091-4379	09:00~18:00	
11	노원구	02-2116-3291	09:00~18:00	
12	은평구	02-351-8888	09:00~18:00	
13	서대문	02-330-1004	09:00~18:00	
14	마포구	02-3153-6267	09:00~18:00	
15	양천구	02-2620-3333	09:00~18:00	
16	강서구	02-2600-1120	09:00~18:00	
17	구로구	02-860-3098	09:00~18:00	
18	금천구	02-2627-1004	09:00~18:00	
19	영등포	02-2670-3964	09:00~18:00	
20	동작구	02-820-1864	09:00~18:00	
21	관악구	02-879-5889	09:00~18:00	
22	서초구	02-2155-8339	09:00~18:00	
23	강남구	02-3423-6029	09:00~18:00	
24	송파구	02-2147-2722	09:00~18:00	
25	강동구	02-3425-5050	09:00~18:00	